

수신 : 아천 영화제

참조 :

1997

발신 : 제1회 서울 큐어영화제 준비위원회

서울 종로구 낙원동 195-1 마동빌딩 301호

Ph) 766 - 5626 / Fax) 766 - 0598

\* 별첨자료 : 불법공연 중지명령 통보

인권 자료실

98  
2/2 A 4

##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의 강제무산에 관한 보도협조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9월19일-25일 개최예정이었던 서울 큐어영화제는 기막 담일 개최장소인 동문회관 층의 전원공급 중단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명령(별첨자료 참조)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큐어영화제는 페즈비언, 게이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의 삶과 욕망, 정체성을 표현하고 모색하는 다양한 영화들을 망라하는 한국 최초의 국제 비경쟁 영화제였습니다. 주지하듯 서울 큐어영화제는 영화제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일종의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재의 심의기준에 따를 경우 사실상 영화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큐어영화제는 영화제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득불 현재의 심의관련법을 거부한 새 영화제 개최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의관들이 교부되지 않는 한 영화제의 개최를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공연법에 의거하여 정부 층은 영화제 개최를 봉쇄하였고 서울 큐어영화제는 개최 담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큐어영화제는 이와같은 비통한 상황에 잔연 굽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화제의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서울 큐어영화제는 따른 시일 내에 제2의 상영장소를 결정하고 영화제의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문화비전

공연판권위원회

우 136-150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1-5 / 전화 (02)957-2983 / 전송 957-6153

문서번호 공윤 제97-2468호

시행일자 1997. 8. 22.

수신 제1회 서울 케이 영화제

준비위원회

제목 '제1회 서울 케이 영화제' 심의 결과 통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공윤 접수 제1812호 ('97.8.11)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심의의뢰하신 '제1회 서울 케이 영화제' 상영작 1편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순번	작품명	규격	시간	심의결과
1	올해의 남자	35 MM	87분	고등학생이상 (연령층)관람가

공연판권위원회

문화의세기가오고있다

'제 1회 서울 케어 영화제' 심의작품 결과 목록

순번	작 품 명	심 의 결 과	규격, 색 채, 시 간	비 고
1	인디언 여름 (AN AMERICAN CITIZEN)	연소자관람불가	35mm. 천연색. 100분	전문가 등을 위한 비공개 시사 - 남성성기 노출
2	주빌리	연소자관람불가	35mm. 천연색. 104분	전문가 등을 위한 비공개 시사 - 남성성기, 여자 음모 노출
3	미드나잇 댄서 (WHEN NIGHT FALLS)	연소자관람불가	35mm. 천연색. 112분	전문가 등을 위한 비공개 시사 - 노골적 통성애 장면

(별지 제 12 호 서식)

(앞쪽)

외국영화수입심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대표자성명	서용진	주민등록번호	
전 상호 또는 법인명	766-5626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95-1 이동 Bd. 701호		
영화제작국	Jubilee	제작국	주빌리
원작자(국적)	(극본가)		Whaley Hartini (uk) productions
감독(국적)	Derek Jarman (uk)		영화제작국
제작국	Richard O'Brien (uk)		Ian Charleson (uk)
규격·색채 및 수량	35 mm	초박(천연색)	1 별
상영권대금 : \$	1991		
수입 프린트대금 : \$			
가격 계 : \$	상영권기간 (년)		

영화진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영화의 수입신약을  
신청합니다.

1991년 8월 11일

신청인 서용진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구하

수수료

공연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1. 영화내용해설서 국문 10부
2. 원문대본 1부 및 녹음대본(국문) 10부
3. 수입약정서 사본
4. 소집면장 사본

- 이 신청서는 두 토로 드릴니다.  
35351-0311번
- 96. 6. 24. 개점

210mm x 297mm  
(신분용지 54g/m<sup>2</sup>)

(별자 제 12 호 서식)

(앞쪽)

외국영화수입심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체 인	① 대표자 성명 한글 표기는 벌인명 호주 스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95-1 이동 Bd. 301호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166-5626
영화 제작국 (영·미국) 제작자 (국적)	Midnight Dancers	③ 사용 제작국 미드나잇 댄서
감독 (국적) 연출 (국적)	Mel chTonglo (필리핀)	④ 제작자 First Run Features (필리핀)
규격·색채 및 수량 수입	35 mm	총 영화 장수 1 속편 천연색
상영권제급 : \$ 수입 허가증 : \$ 가격 세 : \$	⑤ 제작년도 상영권 기간 (분)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영화의 수입심의를  
신청합니다.

1987년 8월 11일

신청인 서명 또는 휴지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영화내통해설서 국문 10부
- 원문대본 1부 및 녹음내본(국문) 10부
- 수입익정서 사본
- 수입면장 사본

공연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35251-031111번  
95. 6. 24. 제정

210mm × 297mm  
(신증용지 54g/m<sup>2</sup>)

(별지 제 12 호 서식)

(앞쪽)

외국영화수입심의신청서

처리기간

7월

신	대표자성명	서동진	주민등록번호	
첨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066-5626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95-1 미동 Bd. 301호	주	
영화제목 (번역제목)	Indian summer	제작국	인디언 여름	
원작자(국적)	Martin sherman (uk)	제작자(국적)	Martin pope (uk)	
감독(국적)	Nancy. Heckler (uk)	영화종류	극영화	
연(국적)	Janson Flemmyng (uk)	조연(국적)	Antony sher (uk)	
규격·색채 및 수량	35	판권	특백(천일색)	1
상영관내금: 등		제작년도	1986	
수입프란트내금: S		상영면기한		(년)
가격 계: S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영화의 수입심의를 신청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신청인 서동진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구하

조회부서류

수수료

1. 영화내용해설서 국문 10부
2. 원문내본 1부 및 녹음내본(국문) 10부
3. 수입약정서 사본
4. 수입면장 사본

공연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 이 신청서는 투료로 드립니다.
- 35351-03111번
- 96. 6. 24. 제출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앞쪽)

## 외국영화수입심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서동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766-5626		
	④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85-1 이동Bd. 301호		
	⑤ 출판된 제목 (번역제목)	Man of the year		
	⑥ 원작자(국적)	Dirk Shafer (USA)	⑦ 제작자 (국적)	christian moeyaert
	⑧ 감독(국적)	Dirk Shafer (USA)	⑨ 출판증명	다큐멘터리
	⑩ 주연(국적)	Dirk Shafer (USA)	⑪ 조연(국적)	Michael Orinstein (USA)
	⑫ 규격·색채 및 수량	35 mm	혹백.	처음색
	⑬ 상영관대금 : S	⑭ 제작년도 :		
수입	프란트대금 : S			
가격	계 : S	⑮ 상영관기간 (년)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영화의 수입심의를 신청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영화내용해설서 국문 10부
- 원본대본 1부 및 녹음대본(국문) 10부
- 수입인정서 사본
- 수입면장 사본

공연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함

\* 이 신청서는 두효로 드립니다.

35351-03111번

96. 6. 24. 제정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진흥이 아니라 반진흥”

## ‘영진법시행령’ 개정안 영화계 반응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전신의 의무 조항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달라진 게 없다.” (김예준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내수시장에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오를 때까지 스크린 네티세를 지속하겠단 문화체육부가 그 공언을 스스로 뒤집었다.” (양기완 스크린쿼터감시단 사무국장)

“국제부의 영화진흥과가 오히려 반진흥 정책을 꺼며 직무유기론 하고 있는 셈이다.” (유인택 (주)씨네2000 대표)

지난 7월30일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새 영화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쏟아지는 영화계의 반응이다. 바단 일색이다. 한국영화 산업의 부인수(스크린 쿼터)를 추가로 줄여주고, 심의 예외 대상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11일 밤효될 새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수기 상영시와 통합전산망 가입시 20일 빙위내에 스크린 쿼터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각각 20일 빙위로 확대했다. 현행 스크린 쿼터는 1년에 146일, 하지만 현행 시행

령은 문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연간 20일을 단축하고, 설·추석 등 성수기에 상영될 때와 통합전산망에 참여할 경우를 합쳐 2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여기에 통합전산망 가입조건을 따로 떼내 20일을 추가 김경희 층으로써 최고 60일까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극장주들이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육책이다. 전신망이 가동되면서 스크린 쿼터는 자동적으로 자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감시단은 “매표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해 탈세를 막도록 하는 전산망 설치는 정부의 의무사항이다. 국내영화산업을 지킬 스크린 쿼터와는 별개 사안이다. 너구나 하시적인 조처도 아니다. 결국 적폐시, 주요 개봉관, 복합관을 운영한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반박한다.

또, 심의 예외 규정의 경우, △교육기관의 정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영화진흥공사 사장이나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3회 이상 개최해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

우한영화 의무상영 축소

▷ “직배·개봉관만 이득”

시전심의 관련규정 여전

▷ “현재 위헌결정 무시”

우 등 기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고등학교 이상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제도권 밖의 독립영화제를 사실상 낭비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쉬의가 어전히 계속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법령 개정 작업을 벌여온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심에 영화를 모아 상영하는 쿼어영화제 같은 경우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비율 상향조정 △국제영화제 상영 공연장에 대한 스크린 쿼터 감경기준 신설 △광고·신선물의 연소자 유해화인제도 신설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숙 기자

## 서울퀴어영화제 내달 개최

지난 5월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삼영관 확보가 힘들어 연  
 기되어 온 제1회 서울퀴어영  
 화제가 포스트 잠무극장과 푸  
 른 굴 양식장으로, 잠소를 잡아  
 오는 9월19~25일에 열린다.  
 영화제사무국은 최근 왕자웨이  
 감독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 대한 수입불가관점으로 동  
 성애가 문제가 되자 영화제 돈  
 안 포함을 염가로 하고 ‘에테  
 로 퀘어 혹은 로모객 살살  
 력?’ ‘에이즈 비디어와 쿼어시  
 네마’ 등의 주제를 논의할 계획  
 이다. (02)766-5626.

새 예 회

# 서 대 문 구

(우) 120-113 서울 서대문구 연희 3동 168-6 / ☎ 330-1410~2 / FAX 330-1430  
처리부서 : 문화공보담당관(5층) 담당: 유병선

문서번호 문공 86430-1574

시행일자 1997. 9. 19.

(경유)

수신 제1회 서울퀴어(Queer)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참조

## 제목 불법공연 중지명령 통보

1. '97. 9. 19 ~ 9. 25(7일간) 연세대학교 동문화관에서 불법상영되는 공연주최 단체에 대하여 조사한 바, 공연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청에 공연신고를 한 후 공연을 하여야 하나 공연미신고로 확인된 바 공연법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불법공연의 중지를 명합니다.

2. 만약, 공연증거를 확보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한 이법조치를 취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제1회 서울퀴어(Queer)영화제

나. 주 죄 : 서울퀴어영화제조직위원회

다. 행사내용

- 기 간 : '97. 9. 19 ~ 9. 25(7일간)

- 장 소 : 연세대학교 동문화관

- 내 용 : 개·폐막식 및 동성애를 다룬 영화상영. 끝.

## 서 대 문 구 청 장

##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 무산에 관련한 서울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회의 입장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염원하고 지지하여 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열렬한 감사의 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지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 퀴어영화제의 경제적 무산을 비통한 심정으로 전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지난 10개월간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지평을 알리며, 주변화되고 억압된 성적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용호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막 당일인 오늘 영화제는 그간의 모든 노력과 준비를 허사로 한채, 영화제 개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장소인 서대문구청 측의 공연중지 명령과 극장 측의 일방적인 전원공급 중단에 의해 강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다시피 서울 퀴어영화제는 이미 영화제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하지만 비영리계 목적의 비경쟁 국제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퀴어영화제는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요구받았습니다. 여타 국제영화제의 경우 영화제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선택적인 심의와 짐열 혜택이 주어질은 물론 필름의 수급에 따르는 제반 투전이 주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연 서울 퀴어영화제의 경우 주변화된 성적 소수 집단의 성정체성이 가진 문화적 관습과 생활 양식을 김안안 적절한 신의 기준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 기관의 능동적인 지원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채, 저지나 방해만이라도 모면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될 수 없다는 현행 심의관련법에 준거할 경우 퀴어영화제와 같은 영화제는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제의 합법적 개최를 풍용하는 해당 관련 기관의 압력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제의 정상적, 학제적 개최를 위한 소망과는 무관하게 새롭게 자체를 불허하는 영화관련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서울 퀴어영화제는 협소한 법적 조건이나 규정에 얹매이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에 기대어 영화제를 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개막 당일 공연 유리 위원회는 미신의자 상영이라는 이유로 서대문 구청은 공연 미신 고단 이유로 공연 중지를 명령하였고 극장측에서는 전원 공급을 중단한채 영화제 개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영화제 개최가 무산된 상황에 굳하지 않고 서울 퀴어영화제는 영화제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고 새로운 상영 장소를 물색하여 영화제를 기필코 재개하겠습니다.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공연관련법이 아니라 성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하는 반민주적 악법임을 저희는 잊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퀴어영

화제는 지금의 판단과 각오에 추호의 흔들림없이 영화제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그간 서울퀴어영화제의 행방과 개최에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울퀴어영화제를 기쁘고 성사시키겠다는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97. 9. 19.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준비 위원회

##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무산되었습니다. 차라리 즐겁고 통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폭력과 혁음을 겸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분노와 용기는 우리를 더욱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퀴어영화제는 개최될 것입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지난 9월19일 개막 당일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명령과 현대 동문화관 측의 전원금급 중단이라는 일차적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차적인 적설적 이유가 영화제의 무산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영화제를 무산시킨 힘은 레즈비언, 게이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들의 모습과 삶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혁암적인 문화적 권력 전체입니다.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말단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 명령으로 가로막으려했던 공연유리위원회와 문화체육부의 태도는 주효했습니다. 우리는 상영기자재를 압수로부터 지켜내고, 상영작들을 암류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영화제 전체 예산을 뺏치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학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 평준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처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지당하고 모두 저지당하며 모두 부정됩니다. 동성에 관련 영화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끔찍한 심의 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심의와 검열의 따뜻한 세례를 받지 못한 서울 퀴어영화제의 상영작들은 담연 모두 불법적인 영화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의 반동성애자, 반민주적 상황을 인정하여주는 문화적 가짐물입니다. 서울퀴어영화제가 개최하고자 한다면 법을 지키라는 주장은 서울퀴어영화제는 절대 개최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서울 퀴어영화제는 적법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개최를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서울 퀴어영화제는 서울퀴어영화제를 준비했던 이를 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퀴어영화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퀴어영화제를 금지하고 부인하는 한편의 세력과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소방하고 금정하는 또 한편의 세력이 논쟁과 도전을 벌여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퀴어영화제의 미래는 영화제 만의 미래가 아니라 다양한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다른 문화를 침싸안는 민주적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 자체를 허물려하는 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률이 관계하고 침조하는 넓은 사

회적 가치와 규범이 이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김해 서울 퀴어영화제가 당장 맞아한 이 침혹한 폐해를 출거운 폐해로 되새기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서울 퀴어영화제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자신의 개회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체험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며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질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서울 퀴어영화제를 개최하고 그 개최를 지원하고 응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어도 최소한 서울퀴어영화제가 우리 시대의 문화적 폐의지일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자신이 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듣고, 그들의 주장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 때만 그들에 대한 격대와 거부는 나름의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가질 것입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재개됩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조만간 새로운 제2의 장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한편의 작품도 누락하지 않고 우리는 애초의 일정과 동일하게 영화제를 강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법률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한 우리가 맘을 것이라곤 우리의 용기와 희망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이제 돌아켜보니 정말로 용감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벗이자 동지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후 할 수 없는 경의감으로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와 희망을 저희에게 덜어주십시오. '결국은, 당연히'라는 태식을 거두고, '그래도, 끝내'라는 의미의 외침을 던져주십시오. 전보다 더욱 열심히 서울 퀴어영화제를 밀어주십시오. 서울 퀴어영화제는 곧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이고, 그 날은 여러분들과 사회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997. 9. 20.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무산되었습니다. 차라리 즐겁고 통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폭력과 억압을 겸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분노와 용기는 우리를 더욱 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퀴어영화제는 개최될 것입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지난 9월 19일 개막 당일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명령과 연대 동문회관 측의 전원공급 중단이라는 일차적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차적인 직접적 이유가 영화제의 무산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영화제를 무산시켰던 힘은 페즈비언, 게이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들의 모습과 삶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문화적 권력 전체입니다. 서울퀴어영화제의 개최를 말단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의 공연중지 명령으로 가로막으려했던 공연윤리위원회의 문화체육부의 태도는 주효했습니다. 우리는 상영기자재를 압수로부터 지켜내고, 상영작들을 암류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영화제 전체 예산을 빼치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실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의 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파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지당하고 모두 저지당하며 모두 부정됩니다. 동성애 관련 영화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끔찍한 심의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심의와 검열의 따뜻한 세례를 받지 못한 서울퀴어영화제의 상영작들은 당연 모두 불법적인 영화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의 반동성애적, 반민주적 상황을 인정하여주는 문화적 기관들입니다. 서울퀴어영화제가 개최하고자 한다면 법을 지키라는 주장은 서울퀴어영화제는 절대 개최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서울퀴어영화제는 적법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개최를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서울퀴어영화제는 서울퀴어영화제를 준비했던 이를 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퀴어영화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퀴어영화제를 금지하고 부인하는 한편의 세력과 서울퀴어영화제의 개최를 소망하고 긍정하는 또 한편의 세력이 논쟁과 토론을 벌여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울퀴어영화제의 미래는 영화제 만의 미래가 아니라 다양한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다른 문화를 감싸안는 민주적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퀴어영화제의 개최자체를 허불허하는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이 근거하고 참조하는 낡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이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감히 서울퀴어영화제가 당장 맞이한 이 칠혹한 패배를 즐거운 패배로 되새기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서울퀴어영화제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서울퀴어영화제는 자신의 개최를 통한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체험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며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질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서울퀴어영화제를 개최하고 그 개최를 지원하고 응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어도 최소한 서울퀴어영화제가 우리 시대의 문화적 피의자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자신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들을 듣고, 그들이 주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들에 대한 적대와 거부는 나름의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가질 것입니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는 재개됩니다. 서울퀴어영화제는 조만간 새로운 제2의 장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가능한 단 한편의 작품도 누락하지 않고 우리는 애초의 일정과 동일하게 영화제를 강행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법률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한 우리가 맡을 것이라곤 우리의 용기와 회당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이제 들이켜보니 정말로 용감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베이자 동지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의감으로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와 회당을 저희에게 덜어주십시오. '결국은, 당연히'라는 탄식을 거두고, '그래도, 끝내'라는 의미의 의침을 던져주십시오. 전보다 더욱 열심히 서울퀴어영화제를 밀어주십시오. 서울퀴어영화제는 곧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이고, 그 날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997. 9. 20.